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30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51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5. 12.
판 결 선 고	2015. 6.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3. 원고 A에 대하여 한 취득세 8,176,170원, 농어촌특별세 817,600원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취득세 2,336,030원, 농어촌특별세 233,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30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A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자연의 주식을 70% 보유한 상태에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가 2009. 6. 30. 위 회사의 주식을 20%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인 원고들이 보유한 총주식의 비율이 70%에서 90%로 증가하였으므로 그 증가분 20%에 대응하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3. 원고 A에게 취득세 8,176,170원, 농어촌특별세 817,600원, 원고 B에게 취득세 2,336,030원, 농어촌특별세 233,580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처분을 하고,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원고들의 주소지인 용인시 기흥구 C, 201동 102호에 발송하여 2014. 4. 7.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7.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30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참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나. 피고가 원고들의 주소지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그 주소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경비원이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에 대한 등기우편이나 특수우편물의 경우 집배원이 거주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취인이 부재중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집배원이 가구 현관에 우편물 도착 안내문을 부착한 후 경비원에게 우편물 등을 전달하고, 주민들은 경비실에 비치된 우편물, 택배 전달대장에 서명한 후 우편물 등을 찾아간 사실, 이와 같은 방식에 주민들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한 바 없는 사실, 원고 B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고지 무렵인 2014. 4. 2.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경비실에서 우편물을 찾아간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위 경비원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경비원이 2014. 4. 7.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송달이 완료되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원고들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일시에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경비원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4. 4. 7.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7. 21.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3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민석

판사 김선아

판사 조 실